

# 대구예술대학교 전임교원 계약제임용규정

(개정 2010.02.19. 법인이사회)

(개정 2010.03.31. 법인이사회)

(개정 2010.08.13. 법인이사회)

(개정 2011.01.13. 법인이사회)

(개정 2012.02.09. 법인이사회)

(개정 2012.06.21. 법인이사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19.11.28. 학교법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 계약제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계약제임용이란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직급과 임용기간, 급여, 기타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임용절차와 임용권자)** ①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 중 전임교원의 재계약(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제5조 (임용계약)** ① 계약임용은 계약 당사자간에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임용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한 전임교원임용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연봉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로 계약을 체결한다.

1. 소속
2. 직급
3. 계약기간
4. 급여
5. 교수시간
6. 업적 및 성과
7. 재계약조건 및 절차
8. 기타사항

**제6조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대구예술대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규정”에 의하며 필요시 총장은 강의담당 책임시간이외 초과강의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기간)** ①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

1. 교 수 : 6년
2. 부 교 수 : 5년
3. 조 교 수 : 3년

② 제1항의 정년보장교원에 대하여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제8조 (급여)** (개정 2010.02.19)

① 우리 대학교 예산범위 안에서 임용자와 피임용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02.09.) ②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되고 신입생 총원률 및 전학년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50%미만인 전공(단,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신입생 인원이 10명에 미달 또는 재적생이 40명 미만)의 교원은 전년도 연봉의 7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13.)

③ 당해학기 책임시수 기준의 50%에 미달되는 교원 또는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교원은 전년도 연봉의 4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2011.1.13.)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 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주어진 전공 교원의 경우에도 2),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폐전공 또는 모집중지된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④ 연봉의 지급**

①항에 의거 책정된 연봉은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수당의 지급**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기근속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량비, 보직수당, 특별상여수당 3 등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계약 조건)** ①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중 인증된 업적을 직급에 따라 “대구예술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할 때 재계약 심사 대상자가 된다.

② 재계약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재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 (재계약 절차)** ①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② 총장은 전임교원의 계약기간동안의 연구실적물, 재계약 심사 평정표, 교원업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교 총장이 재계약(재임용)한다.(개정 2019.11.28.)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못한 경우 당연 퇴직된다.

**제11조 (업적 및 성과)** 전임교원이 “대구예술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교직원보수규정 별표6 특별상여수당③을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3.31)(개정 2010.8.13)

**제12조 (복무)** 계약제 전임교원의 복무는 “대구예술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르며 그 외 관련 법규 및 제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신분보장)** 계약제 전임교원은 계약기간중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거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제14조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계약제 임용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개정 2012.6.21.)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교원 임용 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 (이하“을”이라 한다)은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교원 임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근무기간) 근무기간은 \_\_\_\_\_ ( \_\_\_\_\_ 년간)으로 한다.

제2조 (임용직명) “을”의 직명은 \_\_\_\_\_로 한다.

제3조 (소속) “을”은 \_\_\_\_\_ 전공 소속으로 한다. 다만, “갑”의 학제개편 등 소속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소속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보수) ① “을”의 보수는 대구예술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 이외의 필요한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재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 “을”의 계약기간 동안의 다음 업적을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하기로 한다.

1.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교육, 연구 및 봉사업적평가 점수

구 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조교수	660	300	180
부교수	1,100	500	300
교 수	1,320	600	360

② 전항에 의하여 “을”이 재계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갑”은 재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재계약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6조 (연구업적물 인정범위 및 환산율) “을”의 연구업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교수 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7조 (주당 강의 책임시간) “을”의 주당강의 책임시간 및 책임 강의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구예술대학교 전임교원강의담당규정 및 강사료지급규정을 따른다.

제8조 (의무) “갑”과 “을”의 계약체결에 있어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교법인 세기학원의 정관 및 대구예술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복무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본 대학교 이외의 보수를 수반하는 타 기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공분야와 관련 대구예술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육자로서 자질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학과(전공)의 학생에 대하여 논문

지도, 진로상담 등 기타 학생지도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성신행) ①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 “을”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교과지도내용이 불충실하여 대구예술대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결강, 조퇴, 결근 등이 무상하여 근무 질서가 문란하였을 때.
3.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켜 학교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4. 학과(전공)의 폐지로 인하여 전공분야의 교과목이 없어진 때.
5.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유발케 하였을 때.
6.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서 학교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②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2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상호간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변경 등)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근무기간 중 승진할 경우에는 새로운 직명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본인은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계약서와 대학의 제반 규정에 명시된 근무지침에 따라 교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서명·수락합니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1길 202  
      대    표    자    \_\_\_\_\_

“을”    주            소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            명    \_\_\_\_\_ (인)

[별지 제2호]

## 전임교원 연봉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계약제 전임교원 임용계약에 따른 연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1. (임용직명)

“을”은 대구예술대학교 \_\_\_\_\_로 임용된다.

### 2. (연봉계약기간)

“을”의 연봉계약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 3. (보수)

“을”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연봉액(1년간)은 금 원(₩ 원)(세금공제전)으로 하며,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 보직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4. (재계약)

계약기간 동안 매년 당해년도 교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 연봉 재계약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1길 202 대구예술대학교

“갑” 대 표 자 \_\_\_\_\_

“을” 주 소 \_\_\_\_\_

“갑” 주민등록번호 \_\_\_\_\_

“갑” 성 명 \_\_\_\_\_(인)